

職務發明의 意義 및 成立 요건

I. 意義

1. 技術開發과 被用者 發明權

被用者發明 그 자체는 오랜 전부터 존재한 것이다. 왜냐하면 발명은 주로 기업적인 것이며, 기업에는 기술자가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의 회랍에는 기술자이며 철학자인 다수의 노예가 있었으며, 중세의 길드에 있어서 직공은 대개 기술자이며 또는 예술가이기도 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被用者發明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또 이 문제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는 인식이 아직은 광범위하지 못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被用者發明의 현대적인 의의에 있어서는 인식의 부족과 관계없이 개념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다음에 기술할 내용과 같은 필연적인 사실에서 이를 검토하여 각국이 공히 實理的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1) 여기에서 말하려는 산업적 혁명

원래 생산성을 높이는 필연성에서 기인된 것

이었으나 기계의 출현에 따라 家內工業은 쇠퇴하게 되었고, 남은 노동력은 새로운 기술에 의한 新興企業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들을 기업내부로 흡수함에 따라 단순노동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종래 家內工業에 있어서는 작업 책임자와 직공의 조직이 있었고, 작업 책임자와 직공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거기에는 자발적인 전인격적인 결부가 있어서, 그 굴레에 섬 상호 잘 견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의한 대량생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결부는 희박해게 되고 동시에 불필요한 것으로까지 인식되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시대로 접어들고부터 발명은 이미 노사협조와 같은 형태로는 도저히 출현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2) 현대기업의 요청

위와 같은 이유로 현대기업에서는 단순노동에도 인간적인 배려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업에 있어서 각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저마다의 임무에 관계한다는 생각이 기업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인식되어졌다. 기업은 복잡하고 큰 유기체이므로 각 부서가 개선에 전념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기능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임금의 단순노동자에 대해서는 특히 상기와 같은 인식이 고려되어져야 하며, 기업은 그 노동자가 조작을 맡은 기계에 대한 발명을 무상으로 제공하라고 강요할 수 없게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술적 개선을 위하여 고용된 기술자에 대해서만, 그 기술자가 완성한 발명을 기업이 자기의 것으로 하도록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발명에 의하여 기업이 기술자에게 주는 보상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발명이 기업의 경쟁형태에까지 變革을 끼치는 것이라면 그 발명자는 스스로 기업의 중추에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어느 한 사람이 완성하였다고 보여주는 것이라도 실제로는 거기에 제시된 과제가 상사로부터 부여된 경우도 있으며, 또는 연구소 전체의 큰

과제이었던 것과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과제를 발명인 한 사람만의 노력에 의한 발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이 완전히 완성되기 위한 적합한 상태 및 환경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고찰도 기술적 개발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피용인 발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밖에도 발명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으로 발명을 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가? 발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자질은 어떤 것인가? 등의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백만원을 이미 받았다고 하여서 그 가치인 백만원에 상당하는 발명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령 백만원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의뢰 받은 기술문제의 해결에 열중한 결과 어떤 발명을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발명이 설사 백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우연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발명인에게는 보다 좋은 이해자가 필요하다. 어떤 일을 연구하는데 열중하는 자가 아니면 발명의 완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를 하는 당사자는 연구 이외의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난 사람으로 취급하게 마련이고 이런 경우 자기가 열중하고 있는 발명이 가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조차도 발명인이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발명은 때로는 일반의 상식을 타파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에게는 열중하고 있는 발명인의 노력의 목적이 이해되지 않고, 완성된 발명의 가치를 무가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발명인에게 보다 좋은 이해자가 필요하게 된다. 발명인이 열중하고 있는 발명이 그 이상 계속되더라도 무가치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의중을 말해서라도 납득시켜 깨도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타인 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훌륭한

발명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조정의 따뜻한 눈길의 존재가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被用者發明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업내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문제로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 발명은 크게 나누어서 회사 중역의 발명, 회사의 연구소 혹은 개발부에 소속하는 피용자의 발명, 그 이외 피용자의 발명으로 나눌 수 있다.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피용자 발명에 있어서 고용계약의 목적인 노무의 제공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스스로 분명하게되는 것이지만 기술적인 연구에 종사하고 있지않은 피용자가 완성한 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생각과 중역이 행한 발명과 기업간의 관계에 대하여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면 영업부 사원이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하는 기업상의 개선을 생각해 내었다고 하는 경우, 이 발명과 그 발명을 위하여 사원이 소모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원을 회사가 고용한 목적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즉 고용계약상의 노무의 제공은 아니며 따라서 이 노력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불되고 있지않은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사업을 상세하게 고찰하여 그 결함을 지적하여 그 개선수단을 발견하였다고 하면, 그 개선은 당해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유효하게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명인이 그 전보다도 좋은 대우를 받게되고 주위의 따뜻한 눈길에 감싸여지는지의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영업부 사원의 눈은 기술부 사원의 눈과는 다른 기준으로 보고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기술자가 부지런히 열중하여도 해결곤란하였던 문제가 영업부 사원에 의하여 콜롬부스의 달걀처럼 해결되는 경우도 외부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기업내에서는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해결을 나타낸 자는 우수한 사원일 것이다. 이러한 인재를 제도적으로 발굴하여 나가는 것이 긴요하기도 하다.

기술개발에 의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은 이미 충분히 수행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기술개발을 여기에서 중지시켜도 좋다고하는 것은 아니다. 장래에 걸쳐 끊임없는 개발이 있어야만 지금까지 구축된 경제 규모가 겨우 유지될 것이다. 이제부터의 기술 개발은 눈부신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기술이 고도화해 나가기 때문에 노력은 많고 수확이 적게되는 것도 있다. 발명에 이르는 기술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물론 현재의 기술 상태를 습득하기 위해서도 장시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고도의 기계를 도입하는 경우 그 조작·보수 및 점검을 위해서만이라도 이전의 조작자로는 조작이 불가능하다든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작자에 의한 새로운 기계의 기술적인 지식의 습득이 요청되게 되는 것이다.

각 기업이 생산성의 합리화를 위하여 컴퓨터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컴퓨터가 기업에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적소에 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뿐 아니라 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숙련된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그 기업의 각 부문이 컴퓨터와 관련하여 기능을 발휘하도록 합리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제부터의 발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스텝이 많고 설비가 있는 대규모의 기업은 기업내 연구소에서 현저한 개발을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기업내에서 발명을 개발하고 완성하는 것이 점점 더 곤란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어떤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개발을 다른 기업에 의존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Think Tank와 같은 연구기관에 기업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받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는 발명에 관한 복잡한 계약관계가 성립하여 필연적으로 피용자 발명의 문제로 이러한 복잡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게 된다.

피용자 발명의 문제는 고용노동자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법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도 있으

나 동시에 발명에 관한 문제로서, 특허법상의 문제로 간주할 수도 있다. 여기서 노동법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이 주로 대상으로 하고있는 것은 일반적 인간 노동이며, 발명은 특허적인 인간노동의 성과이다. 특허법 제17조는 발명을 발명완성의 시점에서 발명자 개인에 속하며 특정한 발명(職務發明) 이외의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이 완성되기 이전에 발명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계약을 무효로하는 것에 의하여 발명에 관하여 고용노동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발명의 완성을 고용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았으나 직무 발명에 대해서도 상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으므로 발명의 완성 그 자체는 임금에 의해서 보전되어있는 고용계약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3) 발명의 가치

발명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발명의 가치를 파는 사람과 살 사람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의 합치라는 계약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 수 없으나 피용자 발명에 있어서는 이 계약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가치판단의 일치가 당사자간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이러한 대립하는 주관적 가치판단을 일치하는데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계약의 기초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2. 직무발명의 귀속

피용자가 한 발명·고안은 사용자에게 귀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영자가 예상의로 많은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그러나 특허법의 원칙은 결코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든 기업에 관계를 갖는 자가 매우 많아졌다. 따라서 발명의 많은 수가 기업의 피용자에 의해서 완성된다. 오히려 피용자의 발명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발명을 생각할 수도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인식은 결코 충분하

지 않고 또한 이에 관한 연구도 많다고는 말할 수 없다. 피용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물품을 팔거나 또는 매입하거나 금전을 대부 또는 차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민법대리의 법리에 의해서 그 행위의 효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사용자가 매매·대차의 권리주체가 된다. 피용자가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하였을 때는 종속노동 관계의 법리에 의해서 그 제조한 물건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것이 사상적 산물인 발명등에 대해서는 이상의 것이 그대로 타당치는 않다. 이 문제는 특허법·민법·노동법에 저촉되는(걸려 있는) 곤란한 문제의 하나이다. 피용자가 회사의 업무범위내에서 행한 발명은 피용자에게 속하는가 또는 사용자에게 속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스위스 채무법이나 네덜란드 특허법은 사용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며, 獨逸 특허법은 이 점에 관해서 명문을 걸하고 있으나 종래에는 判例 및 學說에 있어서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즉시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으나 1936년의 나치스 특허법의 발명인 원칙의 확립에 의해서 피용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되어 1957년의 「西獨逸 종업자의 발명에 관한 법률」도 발명인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3. 직무발명의 한계

원래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노무의 결과 생긴 것은 사용자가 귀속하므로(민법 제655조 참조) 발명이라고 하는 노무제공 행위의 결과도 본래는 직접 사용자에게 귀속한다고 하는 사고는 사용자측에 있게 마련이고, 발명은 발명인의 특별한 능력과 노력에 의해 비로소 탄생된 것이니까 발명에 관한 권리는 모두 발명자에게 귀속해야 된다는 사고는 피용자측에 있게 마련이다. 이것을 그대로 피용자 발명의 문제로 노사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버린다면 노사간의 역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각양각색이 될 것이고,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최대한 이용하여 사용자의 이익에 치중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고 피용자의 보호가 허술

하게 되는 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와같은 不合理的 點을 또는 부동적인 點을 역관계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여서는 좋은 발명은 기대할 수도 없어, 국가산업정책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적 방침을 수립하여 이것을 일정한 제도로서 法制化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특허법(제17조, 제18조)은 이상의 제점을 감안하여 立法化된 것이고 사용자 및 피용자가 이루는 각자의 역할·공헌 등을 공평하게 비교형량하여 국가정책의 발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양자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허법 제17조 제1항 전단은 피용자 등(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직무발명이라고 규정한 바, 이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직무발명이나 아니냐, 아니면 업무발명이나의 한계를 제공하는 거소가 보상청구권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II. 성립 요건

직무발명이란 「그 성질상 당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그 사용자 등에 있어서의 피용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특허법 제17조 전단은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하에 이를 설명한다.

1. 사용자 등의 業務範圍에 속하는 발명

1) 사용자 등

특허법상 사용자 등이라 불리우는 자는 자연인 뿐 아니라 法人格을 갖는 자도 포함된다. 타인을 고용하는 자연인·법인·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도 이에 해당된다. 타인회사의 대표자라도 그 대표자와 회사하고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고 본다.

2) 업무범위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는 법인에 관하여 말

하면 정관에 정해진 목적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라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할 뿐만 아니라 「기타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로 해석하느냐이다. 정관기재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업무수행과 기술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위라고 해석하는 자도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무단히 업무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자유발명을 속박할 우려도 있고 피용자에게 예측을 부동케 하기 때문이다.

본래의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한에 있어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것을 불문하고 기술적 문제의 해석을 도모하는 것을 부대하는 사업이라 하겠다. 예컨대 정관에 기계제품·제조·販賣 사업을 목적으로 기재했을 경우에 기계제품용의 화학재료에 대한 연구개발 또는 제조를 행하는 것은 「기타 이에 부대하는 사업」의 범위 내이고 이에 관한 발명은 업무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섬유회사의 자동차 운전수가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발명을 했다고 하면 이 행위는 그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의 업무범위는 기업 등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국가 공무원의 소속관청의 소관범위에 그치지 않고 전관청의 소장범위가 된다. 대회사와 비교하여도 매우 넓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의 범위도 넓어져 불합리한 감을 면키 어려워 국가의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국가 공무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소관범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러나 업무범위가 넓다고 해서 그것을 비례하여 직무발명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범위도 직무발명에 포함하여 계약될 경우가 문제인 것이다. 직무발명은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이더라도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다」라는 독립된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 요건만 충족되면 특별한 경우에는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특허법의 입장이다.

2.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그 사용자 등에 있

어서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1) 직무

직무란 피용자 등이 사용자 등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 등의 업무의 일부에 관하여 담당수행하는 책무를 말한다.

2) 피용자 등

특허법상 피용자 등이라 불리우는 자는 피용자만이 아니고 법인의 임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촉탁이나 임시 피용자도 상근 비상근을 불문한다. 명칭이야 어떠하든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고용관계에 있는 한 피용자이다. 출장사원 또는 파견사원에 대하여서도 출장지 또는 파견근무처 어느 다른 곳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경우 급료, 즉 보수를 지급하는 쪽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연구·개발, 지휘·명령이 보수지급측에 없는 특수한 경우는 지휘·명령측의 피용자라고 해석해야할 것이다. 국립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에 관해서는 「세금은 국민이 내고 발명은 교수에게로」라는 것에 강력한 비난도 있으나 대학의 목적은 투자자본에 걸맞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 및 學術研究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고 대학에서 탄생한 발명에 관련되는 권리를 모두 사용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며 국립대학 교수의 학술연구의 제특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발명규정의 운용에 관해서 대학교수를 민간기업·국공입의 시험연구기관의 연구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데에는 자연히 한계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학교수의 발명을 사용자 등(국가)이 승계해야 할 직무발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학술연구의 발전에 있어 발명을 어떻게 취급하면 특허가 신속·정확하고 유효하게 이용을 도모하고 연구자가 새로운 착상을 낳게 하는 의욕을 유발하는지 또한 장기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기술발전과의 관계를 심분 고려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함이 필요하다.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

발명을 하게 된 행위, 즉 발명을 하기에 이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 과제가 주어

저서 발명을 명령받았을 경우에 있어서의 행위 (발명행위 Inventive Act)를 말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발명 완성에 이를때까지의 행위를 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을 의도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직무수행의 결과로서 탄생된 발명은 직무발명이다. 다만 발명은 사상을 의미하므로 「연구와 실험에 의한 考案(Contrive)한다. 着眼한다 (Think up), 발견한다(Discover) 또는 찾아내는 일」이라고 이해되어 이론적 추구·사색·문헌조사 등을 포함한다.

연구소에서의 실험, 공장에서의 제조작업 등도 포함된다. 또한 이 일련의 행위가 직무발명성을 공인하기 위하여는 모두 근무시간중에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하겠다. 즉 발명은 이단계 순수한 정신적 행위(Mental Act)와 이 정신적 행위의 유형화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4) 직무의 내용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으나 구체적 경우에 그 존재를 판단하는 일은 반드시 용이하다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사항은 피용자 등의 작무내용 또는 책임범위일 것이다. 피용자 등이 담당하도록 명령받고 있는 직무

내용으로 보아서 발명을 시도하고 발명을 하는 일이 당연히 예정되고 또는 기대되게 될 경우에는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무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연구소의 연구원 설계부의 설계자 등은 물론 기술개발 담당 인원·부장·공장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회사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 동일하게 해석될 것이다.

위와 같은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일반사무직원이 있다. 회사의 사장 또는 간부가 년초에 피용자 전원에 대하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발명을 하라는 훈시를 한 결과 이들 피용자가 한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다.

5)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피용자 등의 직무는 현재의 직무만이 아니라 과거의 직무, 즉 직무상의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도 포함된다. 예컨대 현재의 총무부의 직이 있으나 과거에 연구소원으로서 냉장고에 관한 연구에 종사한 적이 있는 직원이 한 냉장고에 관한 발명은 직무발명이다.

또한 현재는 유기화학의 연구를 직무로 하지만 과거에 무기화학의 연구에 종사한 일이 있는 연구자가 한 발명은 직무발명이다.

〈白仁洪 記〉

발간안내

英文 産業財産權 法令集

THE KOREAN INDUSTRIAL PROPERTY LAWS(영문 산업재산권 법령집) 發刊

본회는 날로 가속화 되고 있는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대폭 개정된 산업재산권 4法의 영문 법령집을 다음과 같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자료는 관련업계의 산업재산권 분야 국제간 교류 및 특허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본회로 연락바랍니다.

— 다음 —

- 체제 : 4.6 배판
- 면수 : 174면
- 수록내용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 가격 : 5,000원

※연락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터
Tel : 551-5571~2